

부산광역시사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5. 1. 5)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안 제3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

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18조,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나. 입법예고 : 2005. 3. 11 ~ 3. 31

####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2005. 1. 5)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맞추려는 것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있어 현 조례에 있는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제28조, 제29조)을 삭제하고
-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원가산정방식에서 시가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할 뿐 아니라
- 일부 불합리한 문자 또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됨

2005. 4.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